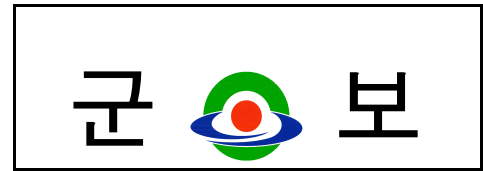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94호 2019. 10. 1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27호)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29호)
-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131호)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35호)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36호)
-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37호)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3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공간의 범위(안 제4조)

-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사용
 -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이 사전 신청하여 사용
-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
 - 개방시간 : 평일 09~18시
 - 개방공간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강당 및 회의실(15개)

나. 사용자격(안 제5조)

- 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
- 군에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용기간(안 제6조)

-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사용신청 및 허가(안 제7조)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사용변경신청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부터 3일이내

마. 사용료 납부 및 반환(안 제12조)

-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준단위	금 액	
회 의 실 강 당	1시간	5,000원	냉난방을 사용할 경우30% 가산

- 사용료 납부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사용료 반환
 - 전액반환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
 -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
 -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
 - 미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서를 제출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051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kurs29@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

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과거 개방공간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군이 개방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준단위	금 액	
회 의 실 장 당	1시간	5,000원	냉난방을 사용 할 경우 30% 가산

○ 초과 사용료 가산

- 초과 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기준사용료 50%
- 초과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기준사용료 100%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기준시간으로 봄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 3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변경)허가서

신청자	개 인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주 소			
사 용 시 설		시설명	사용공간	사용시간	냉난방 사용
					냉방 난방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요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일금 원(₩)			
허 가 조 건		1.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청자	개 인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주 소						
변 경 (취 소) 사 유					인 원 변 경	당 초	명	
						변 경	명	
사 용 시 설		당초	시 설 명	사 용 공 간	사 용 시 간	냉난방 사용여부		
						냉 방	난 방	
		변경	시 설 명	사 용 공 간	사 용 시 간	냉난방 사용여부		
						냉 방	난 방	
사 용 일 시		당초	년 월 일 : ~ 월 일 : (시간)					
		변경	년 월 일 : ~ 월 일 : (시간)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 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제3조)

- 조례 규정 목적 및 전통시장 구역 지정
- 상인, 점포, 임시시장, 시설물,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조례 용어 정의

나. 시장의 관리 (안 제4조 ~ 제8조)

-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
- 임시시장의 개설 기준, 관리, 개설 취소 사항 규정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시 필요 사항 규정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안 제9조 ~ 제12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과 범위, 지정 및 변경 시 절차 규정
-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

라.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안 제13조 ~ 제19조)

- 상인회 설립 및 상인회 회원 규정, 상인회 등록 및 등록취소 시 절차 규정
-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 규정 및 정관 변경 절차 규정
- 상인회 및 상인회 회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에 따른 정산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안 제20조 ~ 제21조)

- 시장관리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의 절차 규정

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안 제22조 ~ 제30조)

-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가능
-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 조치 실시
- 편의시설(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전통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설치 기준
-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민간자부담이 있

는 경우는 상인조직이 가질 수 있으나,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이 필요

- 위탁관리 시 절차,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계약 갱신기간 및 횡수 규정
-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 가능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새마을경제과)
 - 전 화 : 054-650-6091
 - 팩 스 : 054-650-609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례명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

다.

4.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관리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 관리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제1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노점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상인회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상인회의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의 회원인 상인이 영 제9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

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을 전문 업체

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예천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전액 보조금인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3조제1항 및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그 시설물을 소유·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민간자부담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며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

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회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

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 개량·보수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제9조의13 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

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
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
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
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 마 을 경 제 과	
연 락 처	650-6091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 대표 관광지가 원거리 분산되어 있고 연계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를 운영코자 함
- 조례 지원항목에 추가하여 일반인들에게 탑승료 할인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높여 효과적인 시티투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티투어 운영 항목 추가(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국내·외 관광관측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관측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행사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행사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마케팅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마케팅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시티투어 운영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54-650-6033, 팩스 : 054-650-6399, 전자우편 : kbk2864@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 례 명 : 예천군 문화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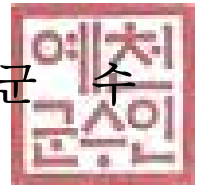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전통민속문화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품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달집태우기 행사, 연날리기대회 등 전통민속놀이에 관한 사항
	국악(판소리) 대제전 및 경창대회 등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서원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정체성 연구사업	윤리선양 실천사업 및 향토사랑사업에 관한 사항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에 관한 사항
음악·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지, 한시집, 화보집 등 출간에 관한 사항
	그림대회, 서예대회, 전시회 등 미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노래자랑, 음악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연극(창극) 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갤러리) 전시회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무용 발표회,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아리랑제 등 각종 지역 예술제 개최에 관한 사항
	다례축제, 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시티투어 운영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관련 각종 교육·회의·자문 등 참석자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활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 진흥 육성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환경정비 및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 등식,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공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7조의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560, 팩스 : 054-650-6339
- 전자우편 : cheonlyong@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 례 명 : 예 천 군 주 차 장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 성 명 (단 체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u> <u>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u> <u>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u> <u>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u> <u>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u> <u>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u> <u>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u> <u>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u> <u>징수할 수 있다.</u> <u>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u> <u>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u> <u>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u> <u>가 정한다.</u>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장기임대료의 개별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안정과 임대료의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장기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삭제 (안 제8조2제2항)

- 현행 : 농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 변경 : 상위법령(농업기계화 촉진법령) 및 관련 지침(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
- ※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나.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지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2019. 9. 10.개정)

나. 종전의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자치법규의 포괄성을 넓히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함 (안 제10조제1항2호)

- 현행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
- 변경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성을 확대

4. 개정조례안

- 불입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농촌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농업기술센터(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
 - 전화: 054-650-8134, 팩스: 054-655-8134, 이메일: mhl630@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예 천 군 농 업 기 계 임 대 사 업 운 영 조 례 안

○ 성 명 (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내 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해당 농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를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2호 중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를 “군수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2(장기임대) ②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은 <u>해당 농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u> ,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제8조2(장기임대) ② ----- ----- <u>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u> <u>며</u> ,-----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u> <u>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2. <u>군수가</u> -----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19년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서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임대료 기준[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시·군·구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 (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지침 별지 제4호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의 원칙 (안 제4조)

-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나. 평가대상 및 업무 (안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대상으로 함.

다. 평가절차 (안 제6조 ~ 안 제10조)

-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행업체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결과의 활용 (안 제11조 ~ 안 제14조)

○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가 가능하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해 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함.

마. 우수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안 제15조)

○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전화 : 054-650-6172, 팩스 : 054-650-6179, 전자우편 : mireu7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여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 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에는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평가 대상인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
행업체의 대표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
부지침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 방법(3단계)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비고
100	40	30	30	가점 3점

다. 평가 항목

(1) 현장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2)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정도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3) 주민만족도평가

- 평가내용 :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 급	평 가 점 수	적 용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입찰참여기회 부여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등
부진(미달)	60점 미만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입찰참여제한 등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3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5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 집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일반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및 보증기간 확대 (안 제8조)

- 예치대상 : 5천제곱미터 → 1천제곱미터
- 보증기간 : 예정공사기간에 12개월을 추가 적용
-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

다. 건축허가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 (안 제10조)

-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함.

라.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안 제13조)

-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출방식의 조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

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확대 (안 제18조)

바. 혐오시설(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강화 (안 제23조)

-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규정을 신설(1~3미터)

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 (안 제27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축소(85제곱미터 → 60제곱미터)
- 총 부과횟수 3회 규정을 삭제(3회 → 이행 시까지)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28조)

- 민간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자.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 화 : 054-650-6353, Fax 054-650-6359
- 전자우편 : erinyes@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5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8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예치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

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일 이내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

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3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항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 연 립 주 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u>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u>)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아. 그밖에 <u>가목 내지 바목</u>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u>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u>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및 연면적	사용승인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5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2,000제곱미터 이상 4,0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4,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6,000제곱미터 이상 8,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8,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9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70,000제곱미터 미만	23시간
7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7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제곱미터 미만	30시간
2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34시간
300,000제곱미터 이상	38시간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2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80퍼센트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현장조사비율

※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건설-기술사) : 367,654원

【별표 4】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제18조제7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
공지(쉼터)입니다.”등)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등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
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0.5m² 이상

나. 재 질: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별표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제28조제4항 관련)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적용의 완화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공사감리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 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 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예천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착공예정일	. . .		
사용승인 예정일	. . .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산정된 공사비 내역)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치자	성명	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위와 같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건축주 () 귀하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사용승인일	. . .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제외
신청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축구분	[] 신축 [] 이전		[] 증축 [] 대수선		[] 개축 [] 용도변경 [] 재축 [] 가설건축물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계자	사무소명		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성명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			연면적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배정서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성명	
제출기한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무대행 건축사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명칭)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대행기간	전화번호	
업무대행 내용	청구금액	일금 원정 (₩)	
	계좌번호	금융기관	
	대행건수	허가(신고) : 건, 사용승인 : 건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소유자의 동의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축물인 경우,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 2. 공개공지 사용현황 및 시설물 설치계획 등이 표시된 배치도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

신고번호	년 공개공지 활용신고 제 호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에 대하여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상기내용 및 신청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공지 활용 관리대장

1. 공개공지 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지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륜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벤 치	□설치(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개) □미설치		운동기구	□설치(개)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설치(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인)(사무소명 :)					
공 개 공 지 배 치 도								

공개공지 사진

-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시설사진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2. 공개공지 등 사용현황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위원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량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u>5천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 ----- ----- <u>3천제곱미터</u> ----- -----
3. 삭제 <u><신설></u>	4. 「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건축물
<u><신설></u>	5. <u>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
<u><신설></u>	6. <u>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
<u><신설></u>	7. <u>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u>

②·③ (생략)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
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
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
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
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신설>

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
치금) ① -----

----- 1천제곱미터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
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
도의 건축물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
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
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
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
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
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
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
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생 략)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② -----

-----.

1. -----
-----.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
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
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
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
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
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생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
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
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
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
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
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
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
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
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
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현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행과 같음)

② -----

-----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

④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3.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
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
일 이내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
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
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

<신 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③ (생 략)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하는 자
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
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
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
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
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
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
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
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
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

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
 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
 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한 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 60

제곱미터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
 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신 설>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
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
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
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
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

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
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
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
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
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
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
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

<신 설>

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